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1. 20 선고 2024가단83953 판결 [건물명도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20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
나. 2024. 6. 22.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유빈

별지